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30 선고 2018가단5001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 고 1. A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8. 4. 25

판결 선고 2018. 5. 30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,927,781원을 지급하되, 피고 C은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,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① 원고는 1993. 7. 13.경피고 A 주식회사(이하 '피고 A'이라 한다)와 사이에 피보험자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,보험가입금액 30,000,000원,보험기간 1993. 7. 13.부터 1994. 1. 29.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A의 전기요금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D과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② 원고는 피고 A이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1993. 9. 23. 피보험자인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에 보험금 27,086,280원을 지급한 사실, ③ 이후 원고는 피고 A, B와 D을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 가소239640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위 법원은2008. 9. 24. "위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,097,254원 및 그 중 16,648,678원에 대하여 2008 . 5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D에 대하여는 2008. 9. 24. 위 이행권고결정이확정되었고, 위 법원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피고 A, B에 대하여 "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,097,254원 및 그 중 16,648,678원에 대하여 2008. 5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8 . 11. 20. 확정된 사실, ④ 위 구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현재85,927,781원인 사실,⑤ D은 2014. 3. 13.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E, F, G, C, H이 있었는데,그 중 E, F, G, H은 2014 . 6. 12. 서울가정법원 2014 느단5399호로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4. 8. 12.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, 피고 C은 2014. 6. 12.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40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. 8. 12.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들은 연대하여,다만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재산의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미수이자 85,927,7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김수영